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영덕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7. 1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영덕군 ◆◆◆◆◆과에서는 “√√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다음 [표]와 같이 2016. 0. 00. ‘(주)ΣΣ건설’과 계약하고, 2018. 0. 0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00	00	하천정비 L=0.0Km	0,000			(주)ΣΣ건설 ΣΣΣ	진도 58%

1. 교량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 관련

합성라멘교(L=54m, B=6m) 교대, 교각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인 쉬트파일 284본에 대하여 토사천공(말뚝박기용, D400mm) 총 1,393m을 시공한 후 쉬트파일 향타작업을

하도록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시공에서는 토사천공(말뚝박기용, D400mm) 작업은 시공하지 않고 바로 쉬트파일 항타 작업을 시공하였음에도, 미 시공한 토사 천공작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교각 세굴방지보호공 관련

교량 하부 교각 세굴방지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세굴방지블럭은 당초 설계 내역서에 세굴방지블럭(1900×1900×700) 510개를 설치하도록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지 여건상 불필요한 세굴방지블럭(1900×1900×700)을 109개로 설계변경 (2016.00.00.) 하면서, 감소된 수량(401개)에 대한 세굴방지블럭 하차비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미 감액 하였으며,

또한 세굴방지블럭(1900×1900×700)이 감소됨에 따라 세굴방지블럭 하단에 설치되는 기초 사석 수량 및 운반비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5교)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영덕군 ◆◆◆◆◆과에서는 “~~○○~~ ~~○○○○~~(~~○○~~5교) 개체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17. 0. 0. ‘√√√√건설(주) ~~√~~/~~√~~/~~√~~’과 계약하고, 2018. 0. 0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 5교) 개체공사	00	00	교량	000			√√√√ 건설(주) √ / √ / √	진도 10%

1. 교량 슬래브 합판거푸집 관련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개정사항 중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1 합판거푸집”편에 따르면 교량 슬래브 합판거푸집 사용횟수는 3회에서 4회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2017년 발주된 위 사업의 교량 슬래브 합판거푸집 455m²는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4회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표준품셈 개정 전 내용인 합판거푸집 3회로 잘못 적용하여 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2. 세굴방지보호공 관련

본 공사의 실시설계보고서 제2장 2-2-3 교각 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대책에 따르면 ㉔㉔5교 교각의 세굴심을 산정한 결과 단면수축 세굴보다는 교각주위의 국부 세굴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으며, 세굴방지공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석으로 보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근거없이 고가의 콘크리트 블록(2000×1500×660) 80개를 설계 내역서(관급 포함)에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영덕군 △△△△△과에서는 “○○ ○○○○○○ 조성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2. 00. 00. ‘(주)CC C C C 외 3개사’와 계약하고, 2017. 00. 0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조성사업	00	00	농공단지	00,000			(주)CC C C C 외 3개사	진도 83%

1. 사토(발파암) 관련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발파암 151,309m³)는 인근 다른 현장(00 000 조성공사)에서 순성토 운반비를 부담하여 반출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본 공

사에서는 사토 적사 비용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토(발파암 125,607m³)는 인근 현장으로 사토처리 하고 남은 사토(발파암 25,702m³)를 보강토옹벽(그리드 설치구간 제외) 대성토 구간에 성토재로 유용하였음에도 사토운반 수량에 대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아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낙석방지책 관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6, 국토교통부)」규정에 의하면 낙석방지책 설치는 도로확장 구간의 임야 절취 비탈면이 발파암 및 풍화암의 혼합절토 높이가 10m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본 공사에서 설치계획인 낙석방지책은 발파암 및 풍화암의 혼합절토 높이가 5m미만 구간(L=90m)으로 낙석방지책이 불필요함에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〇 〇 〇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 * * * * 소
 내 용

영덕군 * * * * * 소에서는 “ 〇 〇 〇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아래[표]와 같이 2017. 0. 00. ‘(주)▽▽▽▽건설 ⅡⅡⅡ’과 계약 하고 2017. 0. 00. 착공하여 2019. 0. 00. 준공 예정으로 ∞∞∞∞공단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〇〇〇 하수관로 정비사업	00	00	하수관로	0,000			(주)▽▽▽▽ 건설 ⅡⅡⅡ	진도 7.5%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감사지적사항 불이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으며 편성목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위·수탁 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편성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통계목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위 부서에서는 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 2017. 7. 10. ~ 7. 14. 동안 실시한 郡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감사지적 이후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의회의결일 2017. 9. 8.)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한 채 2017. 7. 27. 및 9. 22. 대행사업비 0,000,000천원을 집행하여 감사지적사항을 불이행 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구축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에 따르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서비스(분류번호 81151699)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영덕군 ＊＊＊＊＊소에서는 하수관로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을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

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관련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함에도, 본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관련

관로부설 후 기존도로 복구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은 관급자재(현장설치도, 32,500원/㎡ 정도)로 구매하면 더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음에도 표준품셈에 의해 단가산출(55,200원/㎡, 제경비 포함)하여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 * * * * 소
 내 용

영덕군 * * * * * 소에서는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3. 0. 00. ‘〃〃건설(주) √√√’와 계약 하고 2013. 0. 00. 착공하여 2017. 00. 0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00	00	관로	0,000			〃〃건설(주) √√√	진도 96%

1. 설계변경 원가심사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면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시·군 계약심사 대상사업이고,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덕군 * * * * * 소에서는 [표] 설계 변경 현황과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6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0,000백만원 32.4% 증가함에도 설계변경 계약원가심사를 미이행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설계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약 금 액								비 고
당초 (2013.2.26)	1회 변경 (2013.9.12)	2회 변경 (2013.12.16.)	3회 변경 (2014.12.15.)	4회 변경 (2015.9.30.)	5회 변경 (2015.12.23.)	6회 변경 (2016.12.14.)	증 감 (증감율)	

2. 공사비 부담 지급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사원가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운반비¹⁾ 및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원가계산서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고, 신호수, 안전보호책등 안전관리비는 공사내역서상에 계상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사용목적 없이 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0,000천

1)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원 $\{(\text{순공사원가} + \text{관급자재대} \div 1.1) \times 0.08\%$ 을 과다계상(집행0,000, 집행예정0,000천원) 하였고, 보조기층 운반비를 경비성 단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으로 적용하여 00,000천원을 과다계상(집행00,000천원)하였으며,

하천 횡단구간 가물막이를 P.P마대 쌓기에서 톤마대쌓기로 변경시공하였음에도 공사비 00,000천원(집행00,000, 집행예정0,000천원)을 설계 변경시 감액하지 않고 부당 지급하였다.

그 결과 영덕군 * * * * *소에서는 설계 변경 원가심사 미이행 및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부당 집행(집행00,000, 집행예정0,000천원)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부당 집행된 공사비 00,000천원(회수 00,000천원, 감액 0,00천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 ∫ ∫ ∫ 센터, * * * * *소
내 용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하수관로정비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덕군에서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공단 등과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1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공단 및 √/√/√/√/공사와 각각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이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매 회계 연도별로 결산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덕군 ∫ ∫ ∫ ∫ 센터와 * * * * *소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대행사업기관으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 ∫ ∫ 센터 26건, * * * * *소 1건)하였고, * * * * *소에서는

[붙임] 위수탁사업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00,000천원(2016년 00,000천원, 2017년 00,000천원)을 반납받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미반납 이자 00,000천원은 회수 조치하시고,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수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정산 유무	발생 이자	반납 유무	비고
///센터	26건	18,167,000				
2014	8건	5,541,000				
		514,000	무		반납 완료	
		669,000	무		반납 완료	
		820,000	무		반납 완료	
		624,000	무		반납 완료	
		354,000	무		반납 완료	
		534,000	무		반납 완료	
		873,000	무		반납 완료	
		1,153,000	무		반납 완료	
2015	9건	6,713,000				
		650,000	무		반납 완료	
		1,457,000	무		반납 완료	
		1,199,000	무		반납 완료	
		-	무		반납 완료	
		-	무		반납 완료	
		-	무		반납 완료	
		1,260,000	무		반납 완료	
		1,074,000	무		반납 완료	
		1,073,000	무		반납 완료	
2016	9건	5,913,000				
		739,000	무		반납 완료	
		1,796,000	무		반납 완료	
			무		반납 완료	
		700,000	무		반납 완료	
		-	무		반납 완료	
		-	무		반납 완료	
		479,000	무		반납 완료	
		640,000	무		반납 완료	
		1,559,000	무		반납 완료	
*****소	1건	8,653,000				
2016~2017		8,653,000	무		미반납	회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영덕군 ^^ ^^과에서는 “***** ***** 건축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6. 0. 00. ‘VVVV건설(주) :::::’과 계약하고 2018. 0. 0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건축공사	00	00	황토마을 펜션 1	0,000	2016. 2.18	2016. 2.24. 2018. 2.12.	VVVV건설(주) :::::	진도 70%

1. 합성목재데크 및 난간설치 관련

합성목재데크 설치공사는 건설표준품셈 제11장에 따른 목재데크설치가 적정 함에도 고가의 견적처리로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2. 가구공사 및 가전제품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1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비”는 건물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및 가전제품은 물품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별도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를 “시설비”로 예산편성하고 공사비(관급자재대)로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덕 군
관 계 부 서 ∫ ∫ ∫ ∫ 센터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 ∫ ∫ ∫ ∫ 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위탁할 수 있고, 측량·설계·공사감리·안전점검 등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덕군 ∫ ∫ ∫ ∫ 센터에서는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 ∫ ∫ ∫ ∫ 공사 0000지사에게 위·수탁하여 아래 [표] 와 같이 2017. 0. 00. ‘∫ ∫ ∫ ∫ ∫ 산업(주) ∅ ∅’과 계약 하고 2017. 00. 0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〇〇〇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00	0	종합복지관, 산책로, 쉼터 등	0,000			〇〇〇〇 산업(주) 〇〇〇	진도 23%

전망대(휴게쉼터) 스텐드 목재데크 설치공사는 건설표준품셈 제11장에 따른 목재데크를 설치가 적정함에도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로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